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26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송옥주 · 황명선 · 임미애
박홍배 · 윤준병 · 안태준
허성무 · 염태영 · 전종덕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채소·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각종 질병의 확산과 사양관리 환경 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특히 2021년 이후 겨울철 월동봉군 폐사가 급증하면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과수·시설원예 분야의 수분 서비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꿀벌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예찰·진단·검사 및 정보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질병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질병검사는 일부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별 검사 역량과 진단기준이 상이하여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활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질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농가가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1까지 신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꿀벌질병 발생 현황 및 전망
2. 질병 예방 및 방역 정책
3. 질병 검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예찰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질병 진단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3(꿀벌질병 조사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폐사율, 원인 조사

2. 매년 월동봉군 피해조사

3. 3년을 주기로 한 꿀벌질병 실태조사

제18조의4(꿀벌질병 예찰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기관 및 양봉 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예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5(꿀벌질병 검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검사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꿀벌질병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기관
3. 대학 및 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꿀벌질병 검사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꿀벌질병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비율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민관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표준진단체계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표준 진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도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9(꿀벌질병 정보시스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10(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양봉농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의11(꿀벌질병관리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예방,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꿀벌질병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검사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표준진단기준 마련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8조의2(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꿀벌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꿀벌질병 발생 현황 및 전망 2. 질병 예방 및 방역 정책 3. 질병 검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예찰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질병 진단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신 설></p>	<p>제18조의3(꿀벌질병 조사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p>

<신 설>

<신 설>

다.

② 조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폐사율, 원인 조사
2. 매년 월동봉군 피해조사
3. 3년을 주기로 한 꿀벌질병 실태조사

제18조의4(꿀벌질병 예찰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 질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기관 및 양봉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예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5(꿀벌질병 검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검사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꿀벌질병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기관
3. 대학 및 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꿀벌질병 검사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꿀벌질병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비율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민관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

<신 설>

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표준진단체계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도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9(꿀벌질병 정보시스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10(조기경보 및 모니터

<신 설>

링 체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양봉농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의11(꿀벌질병관리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예방, 조사, 연구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꿀벌질병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